

기 관 명

우 주소 /전화번호()000-0000/전송()000-0000
담당부서명: 담당자 ○ ○ ○

문서번호 시행일자 20 . . .
수 신 발 신 기 관 장 인

검 사 대 상 기 기 미 검 사 통 지 서

1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」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검사 사실을 통지합니다.

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상호 또는 명칭	
사무소 소재지	
사업소 소재지	
검사종류 및 검사증번호	검사종류
	검사증번호
미검사 사유	

관련 규정

2. 위와 같은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검사대상기기는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」 제 3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끝.